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26. 2.

제안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 경과

의안명	대표발의자	발의일	경과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3734호)	우재준 의원	2024.9.6.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2024. 11. 21.)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2686호)	김형동 의원	2025. 9. 4.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2025. 11. 14.)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나.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2026. 2. 4.)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26. 2. 6.)에서 이를 심의·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평가 절차와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을 부착한 자동차에 대한 성능유지 확인과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제도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 체계를 명확히 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에 대한 검사기준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위반 시 제재를 보완함으로써 배터리 재활용 활성화와 대기질 개선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된 자동차와 건설기계 등록 말소시 반납해야 하는 저공해엔진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8조제5항).

나.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능유지 확인을 받은 자동차의 배출가스 검사 면제 기간을 기존 3년에서 차종별로 2년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단축 함(안 제60조의2제4항).

다.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능유지 확인을 받지 않은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성능유지 확인을 받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원상복구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

0조의2제2항 및 3항, 제92조제10호의2).

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시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인증시험대행기관에 대한 제재처분을 규정함(안 제60조의5, 제60조의6 및 제91조).

마. 특정경유자동차의 정밀검사 면제 대상을 구체화함(안 제63조제2항 제3호).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능평가를 하도록 함(안 부칙 제8조의 2 신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5항제2호 중 “저공해엔진”을 “저공해엔진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치 및 부품”으로 한다.

제60조의2제1항 본문 중 “자동차의”를 “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저공해조치 자동차”라 한다)의”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에 부착 또는 교체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개조 또는 교체한 저공해엔진이 제60조제1항”을 “제6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3년간”을 “2년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저공해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을 “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로, “등 제4항에 따른”을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본문 중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려”를 “제조 또는 수입하려”로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저공해조치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성능

유지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성능유지 확인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저공해조치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탈거조치 등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성능유지 확인 방법, 확인기간, 성능유지 확인 검사 명령, 원상복구 명령 등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5 및 제60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5(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업무의 대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0조에 따른 인증에 필요한 시험(이하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이라 한다)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이하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 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지정받은 사항 중 인력·시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 및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을 하는 행위

3.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4.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의 방법과 절차를 위반하여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을 하는 행위

④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그 밖에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6(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0조의5제3항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3. 제60조의5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6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검사가 면제되는 특정경유자동차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부, 제62조”를 “여부, 제60조의5에 따른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업무의 대행, 제62조”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6. 제60조의5에 따라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

제91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60조의5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제92조에 제10호의2 및 제1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제60조의2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의2. 제7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94조제3항에 제10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3. 제60조의5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업무를 대행한 자

제94조제4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6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유지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에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반납된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성능평가) ① 부칙 제8조에 따라 배터리를 반납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배터리의 성능 및 안전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를 받은 전기자동차 배터리는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성능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797호 부칙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공해엔진 반납의 적용례) 제5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와 건설기계에도 적용한다.

제3조(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부착한 자동차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 2, 제63조, 제92조제10호의2 및 제9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저공해엔진을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개선명령 미이행에 따른 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1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70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개선을 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의 소유자는 그 조치를 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 전후 각각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에 부착 또는 교체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개조 또는 교체한 저공해엔진이 제60조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에 맞게 유지되는지 성능유지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를 통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성능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성능유지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능유지 확인 방법, 확인기관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하 이 조에서 “저공해조치 자동차”라 한다)의 -----

----- 제60조제1항-----

-----.

② 시·도지사는 저공해조치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성능유지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성능유지 확인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저공해조치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탈거조치 등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확인을 받은 자동차는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날부터 3년간 제62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제63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신 설>

④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점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점검 등 제4항에

④ -----

----- 2년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성능유지 확인 방법, 확인기간, 성능유지 확인 검사 명령, 원상복구 명령 등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⑥ 저공해조치-----

-----.

⑦ -----
--- 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 등 -----

전문기관(이하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지정받은 사항 중 인력·시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 및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을 하는 행위
3.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4.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의 방법과 절차를 위반하여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을 하는 행위

<신 설>

④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
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그 밖
에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
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6(저감장치 등 인증시험
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기후
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
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
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0조의5제3항 각 호의 금
지행위를 한 경우
3. 제60조의5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
사)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
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동차는 정밀검사를 면제한다.

1. · 2. (생략)

3.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한 날부터 3년 이내인 특정경유자동차

③ ~ ⑥ (생략)

제82조(보고와 검사 등) ① 기후 에너지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기후 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제87조제2항에 따라 기후 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이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제16조나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정상운영 여부(제87조제2항에 따라 기후 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

1. 2. (현행과 같음)

3.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검사가 면제되는 특정경유자동차

③ ~ ⑥ (현행과 같음)

[illegible]

탁받은 관계 전문기관 직원의
경우에는 제32조제7항에 따른
사항만 해당한다), 제32조의2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 업무의
적정이행 여부, 제38조의2제5항
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
부, 황함유기준 준수 여부, 제42
조 본문에 따른 연료의 제조·
판매·사용 금지 또는 제한 등
의 조치 이행 여부, 제44조의2
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
기준의 준수 여부, 제48조에 따
른 인증시험, 제48조의2에 따른
인증시험업무의 대행, 제60조에
따른 인증 여부, 제62조에 따른
검사업무, 제62조의2에 따른 이
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의 대행,
제62조의3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업무, 제74조에 따른
검사, 제74조의2에 따른 검사업
무의 대행의 적정이행 여부, 제
76조의5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
효율기준의 준수 여부, 제76조
의10제1항 또는 제76조의12제2
항에 따른 냉매 회수 등에서 냉

--- 여부, 제60조의5에 따른 저
감장치 등 인증시험업무의 대
행, 제62조-----

매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 8의5. (생략) <u><신설></u> 9. ~ 13. (생략) ② ~ ⑤ (생략) 제9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략) <u><신설></u> 6. ~ 13. (생략) 제9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0. (생략) <u><신설></u>	----- ----- -----. 1. ~ 8의5. (현행과 같음) 8의6. 제60조의5에 따라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 9. ~ 1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91조(벌칙) ----- ----- ----- -----.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제60조의5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6. ~ 13. (현행과 같음) 제92조(벌칙) ----- ----- -----. 1. ~ 10. (현행과 같음) 10의2. 제60조의2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

11. (생 략) <u><신 설></u> 12. ~ 14. (생 략) 제94조(과태료) ①·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0의2. (생 략) <u><신 설></u> 11. ~ 16. (생 략)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 제 1의2. ~ 5. (생 략) <u><신 설></u> 6. ~ 9. (생 략) ⑤·⑥ (생 략)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11. (현행과 같음) <u>11의2. 제7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u> 12. ~ 14. (현행과 같음) 제94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10의2. (현행과 같음) <u>10의3. 제60조의5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업무를 대행한 자</u> 11. ~ 16. (현행과 같음) ④----- ----- -----. 1의2. ~ 5. (현행과 같음) <u>5의2. 제6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유지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u> 6. ~ 9. (현행과 같음) ⑤·⑥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	--

일부개정법률 부칙

<신 설>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의2(반납된 전기자동차 배터

리의 성능평가) ① 부칙 제8조

에 따라 배터리를 반납받은 지

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이 국토부장관과 협

의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배터리의 성능 및 안전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를 받은

전기자동차 배터리는 「자동차

관리법」 제35조의13제1항 본

문에 따른 성능평가를 받은 것

으로 본다.